001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93등] 한	012
002	│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을 위하여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근거 규정 위헌소원 사건 [2019 <mark>현마1404등</mark>] 기자	014
00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현확인 사건 [2020현마460등] 기각	017
004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헌법소원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0헌마1739] 인용취소	018
005	「'주거침입강제추행죄'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21헌가9등] 위원	020
006	「'아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22헌가2] 합헌	021
007	□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03] 환전	023
800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19현바462] 합헌	024
009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이자제한법」제8조제1항위헌소원사건 [2022헌바22] 합전	025
010	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며,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법무부공고」 위헌확인 사건 [2020현마1736] 인용(위한학인)	027
011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1등] 합현	028
012	2021년에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의무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관한「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21현마374등] 기각	030
013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3] ☆ 전	033

CONTENTS

014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공고」등 위헌확인 사건 [2017현마604] 기각	034
015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제18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 [2018현마246] 기각	035
016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한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1157] 기각	
017 기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사건 [2019현바550] 한편	
	000
3월 선고	
01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20현가1등] 핵법률회	040
019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비업법」제7조 제5항 위헌제청 사건 [2020헌가19] 현업물업치	
020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사건 [2021현가1] 한법률회	
02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 [2023헌가4] 현업병원치	046
022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현라5] 인왕권한원하 기각	047
02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인영(권한점) 기각	049
024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등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권한쟁의 사건 [2022현라4] 객하	··· 051
025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8현바433등] 한법불합지	
026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41] 위원	

0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하는 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71] ₩ Ⅰ	057
028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937] 기자	058
029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한 조치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399] 기각	060
030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2021현미975]	
	한법불합치 기각	061
031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위헌확인 사건 [2018헌마460등] 기각	063
	5월 선고	
	5월 선고	
032	5월 선고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현내604] 합한	065
	하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065
	하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04] 합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065
033	하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04] 합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34]	
033	하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현비604] 합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1현비234] 합한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 승인 관련「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등에 대한	066
033 034 035	하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현비604] 합한 이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1현비234] 합한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 승인 관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현비36] 강하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위헌확인 사건	··· 066 ··· 067 ··· 069

CONTENTS

038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기 다음 다음 다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하는 ⋯ 073
039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신고 반송행위는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시 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관세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77등] 합환	벌금을
040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	대인의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64] 🛍	077
04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복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227]	
04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20현마1605등] <mark>현법불환지</mark>	080
043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된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20현마1669] 기각	프리에 … 082
044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주사용 백신·형등)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 위헌확인 사건 [2021현	마199]
7각	084
045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에 취소 사건 [2021현마1389] 인용취소	계처분 … 085
046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도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3] 합한	
047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18헌마1215] 기자	_
04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한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2현바227] 한편	
049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 [2021현마171]	_

	기술 선수	
050		
050	│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사건 ('도서정가제 사건') [2020현마104] 기각	093
05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제18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073
051	[2019현마1443등] 기각	094
052	Ⅰ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709] 과하	096
053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97] ﷺ	098
054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2023 <mark>헌</mark> 나1] 기각	099
	8월 선고	
055	│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252] 위한	102
056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군인보수법」제17조 위헌소원 사건 [2020현비594] 한한	103
057	│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180] 합원	105
058	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306] 韓헌	107
_	9월 선고	
		
059	l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전국정당조항,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한 「정당법」 위헌제청 사건 [2021 <mark>현가23등] 한</mark> 기각	108
060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이적행위' 및「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7 <mark>헌바42등]</mark> 합헌	110
061	I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제103조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52]	113

CONTENTS

062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9 <mark>헌마423등] 기</mark> 가 한천	··· 114
063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1165] 현업물회 기각 각하	
064	│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1417] 解述	··· 118
065	I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 [2020현마1724등] №	··· 120
066	I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민사소송법」조항에 따르도록 하는「가사소송법」제1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81] 합헌	
	10월 선고	
067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22현마231등] 기각	124
068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수 있도록 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22 <mark>현마232등]</mark> 기자	125
069	l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9현마158등] 기다	127
070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 <mark>헌라3]</mark> 기각	128
07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 [2019현가30] 합헌	··· 132
072	「군형법」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동성 군인 간성행위 처벌 사건) [2017현자16등] 한편	133
073	I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70] 했던	135
074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0현바402] 합헌	136
075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 [2023현가1] 합한	138

07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풍납토성 보존 · 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정	넹
사건 [2023헌라1] 각하	139
077 생활폐기물 수집 \cdot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	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제14	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89] 합헌	··· 140
078 시장 \cdot 군수 \cdot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cdot 고시하	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374] 한헌	142



이은영 헌법

2023년 최신판례

이은영헌법 2023년 최신판례

2월 선고

001

전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법」조항 위헌소원 사건 (2023, 2, 23, 2019헌비93등) 합헌

판시사항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이 하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3. <u>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u> 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이라 한다)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구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해학생의 <u>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u>해하는지 여부(소극)
- 5. <u>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u> 제17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이 라 한다)가 <u>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u>
- 6.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라 한다)이 <u>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u> 양심의 자유.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1.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고, 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구체적인 학교 현실과 교육적인 측면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설치 장소, 위원의 구성, 회의 개최 시기, 소집 요건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선출 또는 위촉방법, 회의의 구체적인 소집절차나 심의방법 등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별 적용기준**을 학교폭력의 태양이나 심각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중 및 각 조치의 병과 여부 등 조치별 적용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u>하고 있으므로</u>,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u>학교폭력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나 피해 회복 여부.</u> 가해학생의 태도 등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므로,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적인 관점에서 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모두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피해학생의 진정한 피해회복과 학교 폭력의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과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 또한 이러한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신고 · 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접촉 등만을 금지하고 통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은닉성,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가능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5.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과 피해학생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로서 가해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 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6.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학교폭력의 축소·은폐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자치위원회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소집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의무화한 것이다. 학부모들의 참여는 학교폭력의 부당한 축소·은폐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부모 대표의 공정성 확보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나 학교장의 조치는 모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의무화된 것이고,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 학교 측의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을 차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으며, 가해학생 측에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가해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의무화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참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u>피해학생</u>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등의 조치를 받고 그 근거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조항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7. 학급교체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나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조항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왔으나(헌재 1991, 4, 1, 89헌마160,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및 정상적인 교육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보아 <u>피해학생에 대한 서</u>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참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사과는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외에도 <u>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항</u>, <u>학</u> <u>급교체 조항</u> 등에 대해서도 판단되었는데, 모두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u>가해학생의 일반</u> 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면서 개별 학교에 두었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 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무화 규 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002

한재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을 위하여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근거 규정 위헌소원 사건 (2023, 2, 23, 2019헌마1404등) 기각

판시사항

1.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u>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u> (소극)

- 2.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3.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1.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 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 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다. 국가가 자료 제공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자료 제공의 용이성, 적십자 사의 우영 상황 및 회비모금 실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 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과 제6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자료의 범위 는 '적십자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주체들에 대하여 회비모금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고. 회비모 금 등을 위해 각 정보주체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 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은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특별한 사유**'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은 '개인정 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한 형태에 해당한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라는 문언 자체는 비록 불확정적 개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적십자사 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 의 체약국으로서 정부가 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전시 또는 평시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 하는 적십자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성,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 특히 남북 교류사업이나 혈액사업 등 다른 공익법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종합하면 자료제공의 목적은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 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된다. 이때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 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다른 위험스러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 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 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적십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적십자사는 '개인정보 보 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한 성명과 주소는 주민등록사항이므로. 적십자사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유

■ 사건개요

- ㅇ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로 하 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십자법 제8조 제2항은 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는 그 자료의 범위에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 ㅇ 적십자시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위 조항들을 근거로 전국의 만 25세 이상 만 75세 미 만 세대주(20대 단독 세대주·고지 제외 요청자 제외)의 성명과 주소를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10. 31. 경 적십자사에게 위 자료를 제공하였다. 적십자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 였다
- ㅇ 청구인들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자 위 적십자법 제8조, 대한민국의 적십자사에 대한 자료제공행위, 적십자 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허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조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15, 12, 29, 법률 제1364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 결정의 의의

- o 적십자사 지로통지서가 전국의 세대주에게 발송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적십자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ㅇ 참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 이 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모금실무가 개선되었다.